

농업발전기금법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42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윤준병 · 김 현 · 허성무
이춘석 · 박희승 · 박용갑
서삼석 · 김교홍 · 이성운
朴芝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보전·이용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 왔음.

그러나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별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재정소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 AX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에 제약이 있음.

이에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금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농지매매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농업발전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의 감축·철폐 또는 시장접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6.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8.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9.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10.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2에 따른 토지의 임시사용료
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4호의 해외농업자원 개발(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이라 한다)에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수입금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13. 제5조에 따른 차입금

14.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1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출연금

16.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나. 농산물의 수출 촉진

다.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라.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 마.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 바.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 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 사.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 아.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 자.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차.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 카.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 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 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 하.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 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

음 각 목의 사업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경쟁력 향상 지원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피해보전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가공업의 지원

3. 농지의 조성·보전·이용 및 효율적 관리, 해외농업자원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한국농어촌공사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나. 「한국농어촌공사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다.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

라.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마.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

- 바.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에 대한 관리, 보수 및 보강
 - 사. 간척농지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 「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보수 및 보강
 - 아.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 자. 「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 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 카. 농지조성사업
 - 타.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하.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 4.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6.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지원·출자·출연 또는 투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출자·출연 또는 투자를 받은 자는 그 지원·출자·출연 또는 투자를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자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조제8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金)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위탁

제12조(감독 및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3조 (종전 기금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또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수행 중인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기관이 지정될 때까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9조 중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②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

발전기금”으로 한다.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제44호 및 제5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농업발전기금법」

⑤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을 각각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 제6조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99조 중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⑥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발전기금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제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중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각각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54조 앞의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삭제한다.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이하 “농업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관리기금”을 각각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8조제13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 제7조에 따라 농업발전

기금”으로 한다.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한다.

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농업발전기금법」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⑪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⑫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한다.

⑬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

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지관리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⑯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법」”으로 한다.

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법”으

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중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을 각각
“「농업발전기금법」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1조 앞의 “제3장 농지관리기금”을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
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